

특약 변경 대비표

1. 약관명: 「하나 청년도약계좌」 약관

2. 변경 시행일: 2025년 01월 01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: 적용

(단, 제 10조 제2항 개정내용의 정부기여금(II)는 시행일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)

4. 주요 변경 내용: ①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초과 적립액에 대해서 정부기여금II 신설하여 매칭지급

② 3년경과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 60% 지급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 적용범위~ 제9조 특별중도해지시 세율의 적용 <생략></p> <p>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등</p> <p>1. ①~②<생략></p> <p>③ <신설></p> <p>2. <생략></p> <p>① <신설></p> <p>② <신설></p>	<p>제1조 적용범위~ 제9조 특별중도해지시 세율의 적용 <좌동></p> <p>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</p> <p>1. ①~②<좌동></p> <p>③ 이 적금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에 중도 해지한 가입자</p> <p>2. <좌동></p> <p>① 제1항 제1호, 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정부기 여금 100% 지급</p> <p>②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60% 지급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득 구 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인소득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부기여 금(Ⅰ) 산정 기준금액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부기여 금(Ⅰ) 지급비율 <small>주 10)</small>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급여 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합소득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 <small>주 10)</small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400 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600 만 원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월 적금 납입원금 과 40 만원 중 적은 금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부기여 금(Ⅰ) 산정기준 금액의 6.0%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400 만원 초과 3,600 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600 만 원 초과 2,600 만 원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월 적금 납입원금 과 50 만원 중 적은 금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정부기여 금(Ⅰ) 산정기준 금액의 4.6%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③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600 만원 초과 4,800 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600 만 원 초과 3,600 만 원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월 적금 납입원금 과 60 만원 중 적은 금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정부기여 금(Ⅰ) 산정기준 금액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소득 구 간	개인소득		정부기여 금(Ⅰ) 산정 기준금액	정부기여 금(Ⅰ) 지급비율 <small>주 10)</small>	총급여 기준	종합소득 기준	① <small>주 10)</small>	2,400 만원 이하	1,600 만 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 과 40 만원 중 적은 금액	정부기여 금(Ⅰ) 산정기준 금액의 6.0%	②	2,400 만원 초과 3,600 만원 이하	1,600 만 원 초과 2,600 만 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 과 50 만원 중 적은 금액	· 정부기여 금(Ⅰ) 산정기준 금액의 4.6%	③	3,600 만원 초과 4,800 만원	2,600 만 원 초과 3,600 만 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 과 60 만원 중 적은 금액	· 정부기여 금(Ⅰ) 산정기준 금액의	<p>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</p>
소득 구 간	개인소득		정부기여 금(Ⅰ) 산정 기준금액	정부기여 금(Ⅰ) 지급비율 <small>주 10)</small>																				
	총급여 기준	종합소득 기준																						
① <small>주 10)</small>	2,400 만원 이하	1,600 만 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 과 40 만원 중 적은 금액	정부기여 금(Ⅰ) 산정기준 금액의 6.0%																				
②	2,400 만원 초과 3,600 만원 이하	1,600 만 원 초과 2,600 만 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 과 50 만원 중 적은 금액	· 정부기여 금(Ⅰ) 산정기준 금액의 4.6%																				
③	3,600 만원 초과 4,800 만원	2,600 만 원 초과 3,600 만 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 과 60 만원 중 적은 금액	· 정부기여 금(Ⅰ) 산정기준 금액의																				

개인소득	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	정부기여금 지급비율					
총급여 기준 ^{주10)}	종합소득기준							
2,400만원 이하	1,600만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	·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.0%	4	4,800만원 초과 6,000만원 이하	3,600만원 초과 4,800만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적은 금액	· 정부기여금(Ⅰ) 산정 기준금액의 3.0%
2,400만원 초과 3,600만원 이하	1,6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	·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.6%	5	6,000만원 초과	4,800만원 초과	미지급	미지급
3,600만원 초과 4,800만원 이하	2,600만원 초과 3,600만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	·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.7%	소득 구간	개인소득		정부기여금(Ⅱ) 산정 기준금액	정부기여금(Ⅱ) 지급비율
4,800만원 초과 6,000만원 이하	3,600만원 초과 4,800만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	·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.0%	총급여 기준	종합소득 기준			
6,000만원 초과	4,800만원 초과	미지급		1 ^{주 10)}	2,400만원 이하	1,600만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 중 40만원 초과금액	· 정부기여금(Ⅱ) 산정 기준금액의 3.0%
				2	2,400만원 초과 3,600만원 이하	1,6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 중 50만원 초과금액	· 정부기여금(Ⅱ) 산정 기준금액의 3.0%
				3	3,600만원 초과 4,800만원 이하	2,600만원 초과 3,600만원 이하	· 월 적금 납입원금 중 60만원 초과금액	· 정부기여금(Ⅱ) 산정 기준금액의 3.0%
				4	4,800만원 초과 6,000만원 이하	3,600만원 초과 4,800만원 이하	미지급	미지급
				5	6,000만원 초과	4,800만원 초과	미지급	미지급

주 10)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총급여의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을 준용

주 10)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소득구간 1 적용

3.~4. <생략>

5. 정부기여금 지급 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다만,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 (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) 전일까지

3.~4. <좌동>

5. 정부기여금 지급 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다만,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 (특별중도해지 및 3년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

<p>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.</p> <p>6.~7.<생략></p> <p><u>제 11 조 정부기여금의 산정~제 13 조 기타</u></p> <p>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을 의미함)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.</p> <p>6.~7.<좌동></p> <p><u>제 11 조 정부기여금의 산정~제 13 조 기타</u></p> <p>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좌동></p> <p>이 특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 적용합니다. (단, 제 10 조제 2 항 개정내용의 정부기여금(II)는 시행일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.)</p>	
---	--	--